



제 424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타사 부당승환에 대한 부활청구 및 취소권 인정〉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33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강준현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5. 2. 18.

다. 회 부 일 : 2025. 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계약승환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이 같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같은 보험회사 내에서의 경우와 달리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을 소멸시키면서 부당한 계약승환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간의 비교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그러나, 2024년부터 신용정보원이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모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하여 비교안내에 활용이 가능해진만큼 동일한 보험회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다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부당보험계약승환의 경우에도 적용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두
텃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4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부당승환으로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청구권 및 새로운 보험계약 취소권을 다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 ③ (생 략)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에는 <u>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u>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④ ----- ----- ----- ----- ----- ----- <u>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u> <u>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소멸된</u> ----- -----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부당승환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새로운 보험계약¹⁾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

1)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보험계약을 의미

위를 의미함.

○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²⁾는 이와 같은 부당승환 행위를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부당승환 행위로 간주되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 부당승환 행위 간주 요건에 따르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전후로 1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부당승환행위로 간주하되, ① 보험계약자가 손실가능성을 자필서명 등으로 확인한 경우(1개월 이내) 또는 ②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 안내한 경우(6개월 이내)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³⁾.

□ 한편,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제4항 및 제5항은 부당승환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보험계약 부활 청구권 및 새

2)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3)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로운 보험계약 취소권을 도입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계약자는 부당승환으로 인해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낙해야 함⁴⁾.

-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에서 수령한 해약환급금을 반환함으로써 부활의 효력이 발생함⁵⁾.

□ 다만, 현행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상 부당승환으로 인한 보험계약 부활 청구권 및 취소권은 기존계약의 소멸과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 동일한 보험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제4항은 보험계약자가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라고 규정하고

4)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

5) 「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절차 등) ④ 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에 발생한다.

1. 기존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반환
2.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지급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

있고, 「보험업법 시행령」은 이러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취소는 해당 보험계약이 같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만 적용된다고 규정⁶⁾함.

- 이와 같이 기존 보험계약과 신규 보험계약의 보험회사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과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① 실무적으로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계약자가 이와 유사한 타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② 보험회사들 사이의 이해가 충돌되거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⁷⁾.

□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명시하여 기존 보험계약과 신규 보험계약의 보험회사가 다른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권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최근 다양한 보험회사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라고 함) 채널이 보험시장의 주력 모집 채널로 성장함에 따라 대형 GA(설계사 500인 이상)를 중심으로 한 대리점 경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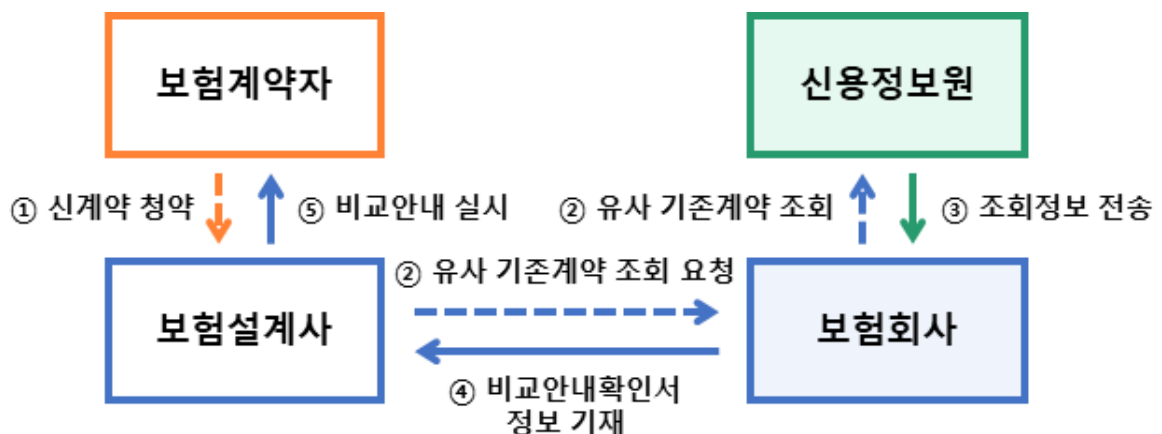
6) 「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절차 등) ⑤ 법 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 및 취소는 해당 보험계약이 같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만 적용한다.

7) 백영화,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 2021.

과열되고 있음⁸⁾.

- 이 과정에서 GA 소속 설계사들이 목표 실적 달성을 위해 다른 보험회사 상품으로의 부당승환을 유도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유인이 높은 상황임.
 - 개정안에 따라 타사 부당승환에 대한 부활 청구권 및 취소권이 인정될 경우 이와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4년부터 보험설계사 등 모집자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려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가입한 다른 보험회사의 유사 보험계약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⁹⁾¹⁰⁾.

[그림 1] 비교안내시스템 서비스 절차



자료: 금융위원회

8) 국회입법조사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부당승환 개선 과제」, 이슈와 논점, 2024. 11. 18.

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계약 이동 시 타사 보험정보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4.

10) 구체적인 시스템 설명은 참고자료 참조

- 비교안내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른 보험회사에 신규 보험계약과 유사한 기존 보험계약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다른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부활 청구권과 취소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¹¹⁾¹²⁾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타사 부당승환에 대한 부활 청구권과 취소권을 인정할 경우 보험회사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에 따라 타사 승환에 대한 부활 청구권과 취소권이 도입될 경우 부당승환 책임자(신규계약 보험사)와 비용부담자(기존계약 보험사)의 불일치, 분쟁조정 등 추가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생명보험협회도 보험시장 이해당사자간 분쟁 개연성이 높아 신중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다만,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상법」 및 생명·손해보험 표준약관 등에서 아래와 같이 일정한 경우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 청구권을 두고 있는 등 보험계약의 특수성과 보험소비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11) 국회입법조사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부당승환 개선 과제」, 이슈와 논점, 2024. 11. 18.

12) 백영화,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 2021.

○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¹³⁾를 두고 있음.

- 즉,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¹⁴⁾에 연체된 보험료에 일정 이율을 추가하여 납입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효력을 회복할 수 있음.

○ 아울러, 생명·손해보험 표준약관¹⁵⁾에서는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¹⁶⁾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회사가

13) 「상법」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복활) 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복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4) 「상법」은 ‘일정한 기간’ 내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생명보험·손해보험 표준약관에서 이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손해보험도 동일한 내용을 표준약관에 포함하고 있음)

16)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갖고 있는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보험회사가 채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 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보험회사에 대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지급하고 있음.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장 부분이 상대방인 보험자에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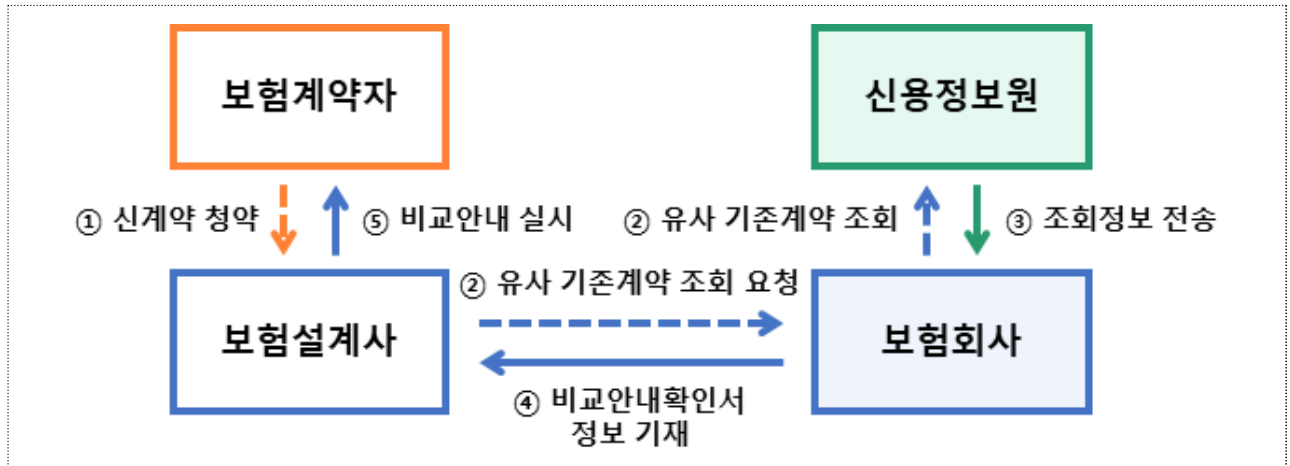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특별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06

참고

비교안내시스템 계약조회 프로세스



1단계 (보험계약자) 신계약 청약

- 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에게 신계약 청약



2단계 (보험회사) 유사 기존계약정보 조회 요청

- 보험설계사,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징구
- 보험회사 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용정보원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기존계약 조회 요청



3단계 (신용정보원) 유사 기존계약정보 보험회사 회신

- 신용정보원,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유사 기존계약정보 보험회사 송부



4단계 (보험회사) 비교안내확인서 작성

- 보험회사, 비교안내대상* 계약 확인 및 비교안내확인서에 해당 계약의 세부 내용 기재·출력

* 보험업법 시행령(§43의2)에 따른 새로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비슷한 기존보험계약



5단계 (보험설계사) 보험계약 비교안내 실시

- 보험설계사, 비교안내확인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신계약 및 기존 계약의 중요사항* 비교안내 실시

* 비교안내시스템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해약환급금, 공시이율 등)는 보험설계사가 직접 확인하여 기재 필요